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4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(2018. 1. 26.) 이후 중·소규모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30029호(2019. 8. 6.)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설치하도록 하였으나,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,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,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보건복지부·국방부·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통령령 제30029호(2019. 8. 6.) 부칙 제5조제1항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기간 “2022년 8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개정함(안 부칙)

1)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 등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공사지연

※ 2,413개 병원 중 853개소 완료(35%) 1,560개소 미완료

- 2)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 병상 확보 행정명령대상 점차 확대
- 3) 보건복지부, 국방부,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고려 설치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2차례 회의를 통해 연장하기로 결정함(1차회의 : 2021.12.14. / 2차회의 2022.3.25.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4. 14. ~ 5. 25.)

대통령령 제 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중 “2022년 8월 31일”을 “2026
년 12월 31”로 한다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522